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18년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이란?

저소득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제도

○ 감경 적용범위(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 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적용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만 해당)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감경제도 개선 사항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을 차등 적용

변경전('18.7월까지)		변경후('18년 8월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차등한 재산과표액을 적용하여 감경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높임

※ 재산과표액 : (현행) 가구원 수 구분 없이 2억4천만원 이하 일괄적용
(개선) 4인 가구 : 3억 2천9백만원 이하 등 차등 적용

◆ 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률 ◆

	급여종류	일반	감경(변경전)	감경(변경후)	
			50%	60%	40%
본인부담률	시설	20%	10%	8%	12%
	재가	15%	7.5%	6%	9%



【별지 제47호 서식】뒷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감경률 60%	감경률 40%
1명	13,100원 이하	13,100원 초과 - 21,160원 이하
2명	25,190원 이하	25,190원 초과 - 91,550원 이하
3명	41,140원 이하	41,140원 초과 - 106,310원 이하
4명	57,820원 이하	57,820원 초과 - 119,140원 이하
5명	60,850원 이하	60,850원 초과 - 125,090원 이하
6명 이상	80,650원 이하	80,650원 초과 - 148,100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감경률 60%	감경률 40%	
1명	46,800원 이하	46,800원 초과 - 62,40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51,110원 이하	51,110원 초과 - 78,0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57,230원 이하	57,230원 초과 - 93,60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62,400원 이하	62,400원 초과 - 112,32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81,870원 이하	81,870원 초과 - 137,90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99,840원 이하	99,840원 초과 - 156,25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월별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감경적용합니다.
2.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감경 적용합니다.
3.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적용 신청한 자는 해당년월의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